

'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답변서

1. 질문사항

질문의원	질문분야	질의내용
김 인	가정복지(세입분야)	○ 가정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시설별 내역은?
이 해 수	가정복지(세출분야)	○ 가정복지시설등 지원에 대한 내역은?

2. 답변 내용

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가정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시설별 세입내역

(단위 : 천원)

시설명	계	국비	시비
계	1,771,468	1,064,257	707,211
아동시설	299,375	215,820	83,555
노인시설	352,425	207,728	144,697
모자보호시설	76,498	61,198	15,300
보육시설	1,043,170	579,511	463,659

☐ 가정복지시설등 지원에 대한 세출내역(=7,900천원)

- 무의탁 노인 : 7,250원 × 400세대 = 2,900,000
- 사회복지시설 : 300,000원 × 5개소 = 1,500,000
- 소년가장세대 : 20,000원 × 63세대 = 1,260,000
- 중증장애인 : 20,000원 × 112세대 = 2,240,000

'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답변서

정신요양시설 '96.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(사회복지과)

■ 운영비 경정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경 정 액	기 정 액	추 가 증	비 고
계	732,332	689,421	42,911	
국 비	565,312	551,537	13,775	
시 비	167,020	137,884	29,136	

※예산서상의 국비경정액(703,196천원) 및 기정액(689,421)은 국.시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 것임.

○ 종사자의 가족수당 대상자 증원 (46명→58명으로 12명 증원)

- 15,000원(1인당지급액) x 12명 x 12월 = 2,160,000

○ 종사자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

종 사 자	인원	월급여액 (예산기준)	1인당월평균 지급액(기본급)	차 액 내 역
시 설 장	3	760,000	900,000	140,000원x3명x12월 = 5,040,000
보 조 원	23	472,000	500,000	28,000원x23명x12월 = 7,728,000
간 호 사	11	543,000	650,000	107,000원x11명x12월 = 14,124,000
취 사 원	3	391,000	450,000	59,000원x3명x12월 = 2,124,000
총 무	3	678,000	770,000	92,000원x3명x12월 = 3,312,000
계	43			32,328,000

○ 종사자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: 8,423,000원

- 의료보험료, 연금부담금, 퇴직적립금,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상여금등